# 각국의 작업시 유해한 화학물질의 노출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본 고는 작업자들이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의 모니터링에 관한 각국의 규정을 비교 · 검토한 자료이다.이들 규정의 비교는 1995년 10월에 38개 국가 및 유럽연합의 행정관리들 에게 송부한질의서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본질의서에 대하여 19개국가와 유럽연합 및 호주자치기구내 8개기구 등 모두 28개기구로부터 1996년 12월까지 회신을 접수하였다.본검토는 화학물질의 공기중 농도와 이들에 대한 인원의 노 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과 측정이 옥외환경에서도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얻어진 결과에 의하면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업무상 노출을 세부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하 도록 규제하려는 경향이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질의서는 일본 노동성의 요구에 의해 이루 어졌다.

#### 1. 서론

본고는작업자들이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작 업환경의 모니터링에 관한 각국의 규정을 비교ㆍ검 토한자료이다.이들규정의비교는 1995년 10월에 38 개국가 및 유럽연합의 행정관리들에게 송부한 "작업 시 유해한 화학물질의 노출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질의서"의결과를토대로작성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일본 노동성의 요구에 의해 이러한 각국의 규정이 기업수준에서 적용되는 모니터링 방 법들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관점에서 실시되었다. 본 검토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화 학물질이 공기중 농도와 이들에 대한 원인의 노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시료를 채취하 고 노출수준을 결정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상의 기준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이같은 방법이 옥외 환경에서 도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데 또 다른 역점을 기울였 다

#### 2. 질의서

사용된 질의서 양식은 기준의 법과 규정 및 제시되 어 있는 적절한 측정방법에 관한 10개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질의서에 대하여 19개 국가와 유럽 연합 및 호주 자치 기구내 8개기구 등 모두 28개기구 로부터 1996년 12월까지 회신을 접수하였다.

호주의 6개주 2개 자치령 및 연방정부로부터의 답 변은 개별적으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호주의 산업안 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각 단위정부의 영역하에 있도록 하는 연방헌법시스템으로 되어 있 기때문이다.

〈표 1〉 [질문 1] ~ [질문 4]에 대한 결과

### 〈표 2〉 각 질문에 관련된 유럽연합의 지령의 제목

		문1) 모니터링 의무	문2) 관리대상 화학	문3) 관리대상 화학	문4) 화학물질의 범
	국가명/치역	가 법 또는 규정에 명	물질이 명시되어 있	물질 목록이 지난 10 년간 변경된적이 있	주 또는 명칭이 언급
		시되어 있는가?	는가?	는가?	되어 있는가?
호	ACT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연방정부	Yes	Yes	No	두가지 모두
	New South Wales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북부지역	Yes	Yes	No	두가지 모두
	Queensland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남부호주	Yes	Yes	Yes	명칭만 언급
	Victoria	Yes	Yes	No	명칭만 언급
	서부호주	Nο	Yes	Yes	범주만 언급
	벨기에	Yes	Yes	Yes	범주만 언급
	불가리아	Yes	Yes	No	명칭만 언급
	캐나다	Yes	Yes	Yes	명칭만 언급
 체 코		Yes	Nδ	No	No
덴마크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유럽연합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프랑스		Yes	Yes	No	두가지 모두
헝가리		Yes	Yes	No	명칭만 언급
인 도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아일랜드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대한민국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말레이시아	Yes	Yes	No	명칭만 언급
	멕시코	Yes	Yes	No	두가지 모두
	네덜란드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노르웨이	Yes	Yes	Yes	-
	싱가폴	Yes	Yes	Yes	범주만 언급
	스페인	Yes	No	No	명칭만 언급
	스웨덴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영 국	Yes	Yes	Yes	두가지 모두
	유 고	Yes	Yes	No	범주만 언급

## 3. 결과

J. 24	
/	설문 ①부터 설문 ④까지의 답변에 대한 요약을 수록하였으며, 〈표 2〉에는 유럽연합현 의 첫 지원 80/201/4000 : 장선장 그리고의 이전 및 보건의 향상을 드며친기 의한 바라
	해령위희집룑 원계상되지 육열 작 리류자원 안전 및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에 관한 사항
	-협의회 지령 88/364/EEC : 규정된 약품 또는 작업활동의 금지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위원회 지령 91/322/EEC ; 작업장에서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약품에 대한 노출과
문1) 모니터링 의무가 법 또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의회 지령 80/1107/EFC를 수행할 때
	허용치 수립을 위한 사항
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	-협의회 지령 90/394/EFC ; 작업장에서 발암성 물질 관련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에
는가?	관한사항
	-혐의회지령 78/610/FBC; 연활비닐단량체에 노출된 근로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한물질에 대한 작업자의 연활별을 모니터링해야할 고용주 또는 기업의의무에 대해 회원 국가의 법, 규정 및 행정조치를 근접시킨 사항
	학의 전국가의 법 규정 및 행정로로 클 근접시킨 사항 보고 하고 모르기 법 기 기 기에 는 것으로 내다하였다. 역의회 기병 & 200 MEPC : 작업장에서 금속납 및 납 화합물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위 기기 기
	다 그렇다되 지평 & 2005/PEPC; 작업장에서 금속납 및 납 화합물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위
	체는 비록 후중 원방정보로 극원 감을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은 그와 같은 조
	답해였다지령 83/477/EEC; 작업장에서 석면에 대한 노출 관련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학물을바노함을 모니터링하는것을 고용주또는기업의 의무로규정하는것이 일반
	할수하였다. 리령 89/391/EEC :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는 착업장위험물의 환리를 위하여 국가 시범규정 제13절에 "평가결과 모니터링이
	-형의회지면 80364 PDC: 규정된 약품 또는 작업활동의 규지에의해 구로자를 보호하는 고용무는 작업장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적합한 모니터 링을 실시해야 한다. 고규
	-위원회 지령 91/322/EEC: 작업장에서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약품에 대한 노출과 코 뒱렌28위험(레토3작)건간화를 알절화가 두주주리 웹사화고용 1807/10/9년바인를보고행할
ㅁ이 키키레 시 커커 ㅁ키시	
문2) 관리대상 화학물질이	를 내동생 및 결건하여 의해 규정된 지침 및 규정에 따라서 매년 관찰하여야 할 의무
명시되어 있는가?	-협의회 지령 90/394/EEC; 작업장에서 발암성물질 관련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관
	반물활약환리에관한규정 1944(COSHH 1944)의 10에서다음과같은상황의어느하
	모현의환질화가연예상기업환기보전량한사는준되는 로른관리가약설환하는 명단
	는 과 장 한 경우에 포인터 왕을 실시되는 하다 수 생리 바법의 실패 또는 성능저하기
	의원국가의법 규정의 해정주기를 그러나 보다 하다. 또는 된다가 작을이다고 '8억 의원국가의법 규정의 합정주기를 그려서 가는 살아 가리바법의 실패 또는 성능저하가 - 혐의회지령 &2605/EPC: 작업장에서 금족납 및 납화합물에 대한 노출관련위험으로부 할 습인을 때 " "출택 수 등 관광계 (MEL) 직업상 노출기준(CRS) 또는 내부기준이 초과되
	「또क्षण्येनोधं धंश्वनाम्योण प्रकेरेकार्य्यम्वयान्य प्रक्रिके म्यार्थे म्यार्थे प्रक्रिके प्रक्
	의 경우 한 환창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협의회지령 91/982/EEC ; 지령 83/477/EEC의 수정에 관한 사항
	집 -협의회 지령 90/394/EEC : 협의회 지령 67/548/EEC에 의해 R45로 분류되었거나 분류될
문3) 지난 10년간 관리대상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하여 분류, 포장 및 위험물 표시에 관한 법, 규정 및 행정조치를 근접
화학물질 목록이 변경	시키는 관련 사항
된 적이 있는가?	-협의회 지령 67/548/EEC 및 지령 94/60/CE ; 여기에서는 그 부록(요점 29)에 현재까지 발
	암성 물질로써 특징지어지고 분류된 모든 물질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이 목록은 새로
	운 물질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도록 되어 있다.

문4)화학물질의 범주 또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는 . 가?	화학물질의 범주에 관한 사항 -협의회 지령 88/364/EEC -협의회 지령 94/60/CE 화학물질의 명칭관련 -위원회 지령 90/322/EEC -협의회 지령 78/610/EEC -협의회 지령 82/605/EEC -협의회 지령 83/477/EEC	
문5) 공기 중 농도의 측정법이 규정되어 있는가?	-협의회 지령 88/642/EEC: 작업장에서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약품에 대한 노출 관련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항 -협의회 지령 82/605/EEC: -협의회 지령 83/477/EEC	
문6) 공기 샘플링 방법이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가?	-협의회 지령 82/605/EEC -협의회 지령 83/477/EEC -협의회 지령 83/642/EEC(간접적으로)	
문7) 정량적 분석법이 법 또 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 는가?	-협의회 지령 82/605/EEC(금속납) -협의회 지령 83/477/EEC(석면)	
문8) 공기 샘플이 어디서 취 해져야 하는지를 법 또 는 규정에 명시하였는 가?	-협의회 지령 78/610/EEC -협의회 지령 82/605/EEC -협의회 지령 83/477/EEC -협의회 지령 88/642/EEC 위에 언급한 지령에서의 측정은 원인에 대한 샘플링 방법에 의한 것인지 또는 적절한 지역의 다른 고정된 지점들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문9) 인원에 대한 샘플링 방 법이 규정되어 있는 가?	-협의회 지령 82/605/EFC -협의회 지령 83/477/EFC -협의회 지령 88/642/EFC	
문10) 실내·옥외가 모두 해당되는가?	위에 언급되어 있는 지령들은 실내 및 옥외 작업장을 모두 다루고 있다.	

26개 정부가 그들의 법 또는 규정에 관리대상 화학 물질이 명시되어 있다고 대답하였다.예를 들어 덴마 크는 "덴마크 작업 환경법"에 "물질 및 재료에 관한 1982년 명령 번호 540"에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규정 하고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알고 있는 위험이 존 재할경우명령 540의 범위를여러 작업부문에서 다룰 스이트라니 0 및 가 0 퍼런지 호기디어니

[질문 ]]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상의 노출을 모니 터링해야 할고용주 또는 기업의 의무가 귀 국가에서는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3) 석면에 관한 1986년 명령번호 660 (명령 984에

의해 개정됨)

체코와 스페인 두 나라만이 그들의 법 또는 규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체코정 부는이와같은화학물질의목록은없지만, "국가위원 회 법 번호 20/1966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위험한 화학 물질을 유도해 낼수 있다"라고 부연적으로 답을 하였 다.

이것이 질문 2[질문 3 및 질문 4에 대한 그들의 답 변이 부정적이 되었던 이유라고 밝혔다.이상에서 볼 때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 반화된관례임을나타내준다.

모든 화학물질을 법 및 규정에서 관리 대상 물질로 규 정하고있다.

28개 정부 가운데 17개가 작업장에서 관리행위가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지 난10년간변경한적이있다고답하였다.

이들정부의약50%정도가질문에대한답신에서석 면또는인조섬유를목록에추가하거나규제치의변경 또는 금지품목으로 규정한 화학물질로 언급하고 있었 다.이들 정부에는 Queensland (호주의 주), 서부호주 (호주의 주) 덴마크 유럽연합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 이 및 영국이 있다.

예를 들어 서부호주에서 새로이 포함시킨 화학물 질에는 석면,이소시아네이트,스티렌 및 폴리우레탄 이었다.

또한, 인도에서 새로 변경된 물질로는 석면, 발암성 물질 염료및 염료중간체그리고벤젠등을 들수있다.

유럽연합의 지령 94/60/CE에는 현재까지 발암성 물질로 특성짓고 분류된 모든 물질의 목록이 있으 며,이 목록은 새로운 물질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됨 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였는데. 실리카(석영, 트리디마이트, 크리소토바라이트)에 대 한 새로운 규정 및 석면 규제치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 디그치여니

[질문 2] 이들 관련 법 또는 규정에는 해당 물질에 대해 작업자의 노출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관리되어 야 할 화학물질이 명시되어 있는가?

린 기 기 기 다 건 기 수 다 이 기 기 기 기 교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노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이전에는석면.납및염화비닐에만적용하였다.영 국에서도 질소와 같이 단순한 질식성물질을 제외한

모든 회답의 약 50% 정도가 관리 행위를 요하는 그 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법 또는 규정에 범주와 명칭 모두언급하고있다고답했다.

이들은 호주의 4개주, 덴마크, 유럽연합, 프랑스, 아 일랜드,대한민국,멕시코,네덜란드,스웨덴 및 영국이 다.예를들어 영국에서는 납과석면을 제외하고 "건강 에 유해한 물질관리(COSHH)"에 의해 단순한 질식성 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COSHH에는 발암성 물질의 관리영역도 포함되어 있 다

서부호주,벨기에,싱가폴 및 유고에서는이와 같은 화학물질의 범주만이 명기되어 있다.

남부호주, Victoria (호주의 주), 불가리아, 캐나다, 형 가리,말레이시아 및스페인의 7개의 국가 또는지역은 이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행위를 위하여 단지 화학물질의 명칭만이 명시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는 보건성의 규정 번호

질문 3 지난 10년간 작업장에서 관리행위가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화된 화학물질의 종류가 변경된 적 이 있는가?

적인 추세는 관리행위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화 학물질의 어떠한 범주 또는 종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것이다.

(출처: ILO CIS No. 74581, Regulations on Monitoring of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at Work)

〈다음호에계속〉

질문 4 관리행위를 요하는 그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 한 법 또는 규정에 그 범주 또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 는가?